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2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성일종·고동진·이종배

장동혁 · 서범수 · 서지영

박덕흠 · 김상욱 · 송석준

주철현 · 김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생산·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 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 18조제10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정을"을 "안정 및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① 제1항의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 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 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 ①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및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발전을-----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 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 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의 부과금 및 그 가산 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 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